의안 번호	57

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9.28.)

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(산업경제복지위원회)

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9.28.

산업경제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일: 2026. 8. 26. 창원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27.(의안번호 제57호)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5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7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9.28.) 상정, 질의・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: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)

가.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신규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나. 영유아 보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(법인·단체 또는 개인)에게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,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.

다. 이에 따라 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2항」 및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

나.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「창원시 영유아보육조례」제18조(위탁운영)
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○ 필요성

- (보육 행정의 전문성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) 공모를 통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(법인·단체 또는 개인)를 수탁자로 선정함으로써 급변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- (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) 민간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을 통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, 민간 조직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.
- (행정 부담 경감 및 보육 공공성 확보)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, 시의 철저한 지도 감독하에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함.

다. 사무의 내용 :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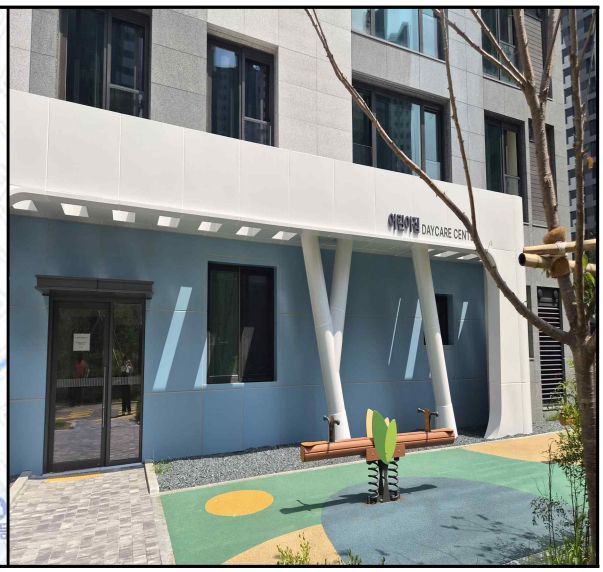
- 국공립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관리, 보육교직원 관리, 영유아 보호 및 교육 등

라. 시설 현황

시설명	소재지	정원(명)	시설규모(m^2)	공동주택명	사업비*	개원예정일
창원시립 센트럴 아이파크어린이집	성산구 신월동 90	46	307.41 (1층)	창원 센트럴아이파크 (2026.9월중 준공)	396백만원	2027.3월

*유사한 규모 어린이집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인건비 등 산출로 향후 변경 가능성 有

○ 위치도 및 전경사진

센트럴 아이 파크		

마. 위탁기간 : 위수탁일로부터 5년

바.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

(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)

사. 적정성 검토 결과

검토기준	검토결과
①다른 사무방식으로 운영 가능성	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설로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직영 운영은 인사·노무관리 등 행정부담이 크고 운영의 유연성이 낮으며, 공공기관 위탁은 수행 가능한 기관이 없어 현실성이 부족,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 효율성,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임
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
③경제적 효율성	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관리 측면에서 직영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
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보육교직원 채용, 프로그램 구성, 학부모 관리 및 어린이집 시설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업무 전반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
⑤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	운영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실적 및 자료관리가 가능하며, 통계자료 활용으로 사업개선 도모
⑥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법령·지침 및 위·수탁 협약에 의거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·점검을 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
⑦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	민간위탁 시 영유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발굴 용이

⇒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관계법령,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,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보육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아. 향후 추진계획

- 수탁 신청 공고 : ‘26. 9. ~ ‘26. 10.
-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: ‘26. 10.
- 위・수탁 계약 체결 : ‘26. 12.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전현주)

○ 본 동의안은 신축 공동주택인 창원 센트럴아이파크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, 보육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○ 「영유보육법」 제12조제3항[1] 및 「영유보육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1항[2] 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, 금번 위탁 대상인 창원센트럴아이파크의 세대수는 1,509세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되었음.

○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”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. 영유아 보육, 보육교직원 관리, 부모 상담, 보육프로그램 운영, 급식·위생 및 안전관리 등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의 축적된 경험을 요구하는 본 사무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○ 아울러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[3]과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8조제1항[4]은 시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

1) 「영유보육법」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**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** (이하 생략)

2) 「영유보육법 시행령」 제19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**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.**

3) 「영유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**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**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공개경쟁의 방법**에 따른다.

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함.

○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.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3조제2항[5]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.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20조제1항[6]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본 동의안이 조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적정한 조치임.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및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8조와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‘공개모집’으로 명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점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당함.

○ 집행기관은 동의안 제출 전인 2026. 8. 21.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7조[7]에 따른 ‘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(서면)’를 개최하여 ‘적정’ 원안가결 처리를 완료하였음. 이는

4)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8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**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** 다만,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.

5)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13조(계약 체결 등) ② 위탁기간은 **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**로 한다.

6) 「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20조(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) ① **위탁기간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부령”이라 한다) 별표 8의2에 따라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.** 다만, 시장은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

7)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7조(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**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**

의회 동의안 제출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지역 내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,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. 또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법률적·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 아울러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,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집행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한 심사 절차 이행과 책임감, 공신력,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며,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운영기준과 지도·감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5. **질의·답변요지**: 기재생략

6. **토론요지**: 없음

7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(동의)**

8. **소수의견요지**: 없음

9. **기타 필요한 사항**: 없음